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61
------	-----

2023. 07. 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이종환 의원(찬성자 4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6.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환 의원)

1. 제안이유

-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 서울시 문학진흥 및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시민, 문학단체의 수요에 보다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학술 활동 지원 및 문학 교육 단체 지원을 명시함(안 제5조).
- 나.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시장이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과 교육 등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되었음.

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개정안은 문학진흥이나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육성, ◀문학진흥을 위한 학계·학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연구·학술 활동 지원,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서울시 소유의 문학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은 다음 표에 명시된 ▶ 문학의집에서 운영하는 사업,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사업, ▶연희 문학창작촌이 있음.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은 30~50대, 문학의집 서울은 60~70대이므로 문학 진흥 학술 활동이나 사업과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문학관련 프로그램 및 예산 현황 >

연번	문학의집에서 운영하던 사업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사업	연희문학창작촌
2022년 예산	222,050천원	270,000천원	505,000천원
1	수요문학광장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時 작품 설치	국내외 입주작가 집필실 지원
2	금요문학마당	시가 자라는 나무	북콘서트
3	서울문학인대회	서울문학기행	문화캠페인
4	우리 시 우리 노래/신작가곡음악회	문학단체 특성화 사업(공모)	소설가와 사회학자의 대화
5	문인 음악회	작가와의 만남	웹진 발행
6	문학 콘서트(신규)	문학, 그림을 만나다	
7	문학청소년축제		
8	시인학교(남산문학당·정오의 시 읽기)		
9	사랑으로 쓰는 서울, 우리 동네 이야기 공모		
10	자연사랑문학제		
11	기획전시		
12	월간 뉴스레터 및 홍보물 발행		

다. 위탁 근거 신설(안 제10조)

- 개정안은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은 ‘연희문화창작촌’과 ‘문학의집 서울’로 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문학의집 서울’은 본관과 산림문화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본관은 舊안기부공관을 리모델링하고, 산림문화관 건물은 기부채납¹⁾받은 시설로 2005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사)자연을 사랑하는문학의집 · 서울’에서 3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음.

<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 현황 >

구 분	연희문화 창작촌	문학의집 서울		
		본관	산림문화관	주차장
사용허가 기간	2022.1.~ 2026.12. 5년마다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19.7.12.~ 2022.11.30. 3년 재계약 20년사용	2021.3.26.~ 2026.3.26. 3년 재계약 20년사용	2021.3.26. 2026.3.26. 3년 재계약 20년사용
최초 사용허가일	2013.1.1.	2001.7.12.	2005.11.5.	2004.6.15
사용자	서울문화재단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 서울		
연간 임대료	면제	41,917천원 (토지, 건물)	52,144천원 (토지)	

1) 산림문화관 건물은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의 예산지원으로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 명의로 건립 후 市에 기부채납하여 20년간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고 건물은 무상사용하고 있었음.

- 다만, 운영단체가 서울시 승인 없이 교회와 카페 등을 불법 전대하여 사용하다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2022.6.22.)을 받았음.
- 운영단체는 행정심판을 청구(2022.7.8.)하여 기각(2023.1.17.)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계약이 끝난 본관을 제외하고 산림문학관의 계약기간은 소송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문화본부는 해당 시설의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문을 냈으나 최고가 입찰로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건물의 노후화를 개선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앞서 건축 기획 등에 관한 용역비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천만원 편성한 상황임.
 - 민간위탁은 행정청의 소관 사무 중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하게 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시설을 문학진흥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해 문학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위탁사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임.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계획²⁾’에 따르면 불필요한 사무, 혹은 유사한 사무를 통·폐합하고 유지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2)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조직담당관-10943, 2021.10.11.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업은 감소추세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가족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답변: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61
----------	-----

발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의자: 이종환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아이수루
,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종태,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9명)

1. 제안이유

-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 서울시 문학진흥 및 서울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시민, 문학단체의 수요에 보다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학단체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학술 활동 지원 및 문학 교육 단체 지원을 명시함(안 제5조).

나.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p> <p>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p>
<u><신 설></u>	<p>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제10조(생략)	제11조(현행 제10조와 같음)